「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박 은 희

2. 제안이유

○ 박정희대통령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나. 사업, 기본재산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6조)
다. 임원, 이사회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～제9조)
라. 운영재원, 수익사업 및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～제12조)
마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바. 공유재산의 관리위탁·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사. 보고·검사, 공무원의 파견·겸임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아.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,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박정희대통령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박정희대통령 생가 및 역사자료관 등 기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일원화하고, 전시·교육·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.

- 또한,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대한 시장의 승인과 보고·검사 규정을 두어 재단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,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, 비용추계에서도 향후 운영 재원을 시비로 계획하고 있어 재단 설립 이후 시의 재정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. 따라서 자체 수입 및 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비 의존도를 낮추고,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